

의안번호	제471호
의결 연월일	2023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노금식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11월 17일

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노금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7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1월 17일

발 의 자 : 노금식, 최정훈, 김성대,
오영탁, 이옥규, 이태훈,
임영은

1. 제안 이유

-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충청북도 내 치안유지·범죄예방·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조례의 규정 취지에 맞게 조례명 변경(안 제명)
 - － (현행) 「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」
 - － (개정) 「충청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」
-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~제2조)
-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자율방범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지원된 경비의 목적 사용 지도·점검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
- 모범 자율방범단체 또는 대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자율방범단체 원활한 지원 및 지도·점검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의무를 규정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»,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: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충청북도 내 치안유지·범죄예방·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율방범활동”이란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.

2. “자율방범단체”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.

가. “자율방범대”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
나. “자율방범연합대”란 자율방범대가 모여 구성한 시·군·구 단위의 조직으로서,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
다. “자율방범연합회”란 시·군·구의 자율방범연합대가 모여 구성한 조직으로서, 법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
3. “자율방범대원”이란 자율방범대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경비의 지원) 도지사는 자율방범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군·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
2.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피복, 장비 및 순찰차량 지원
3.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·훈련
4. 자율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
5.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의 가입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제5조(지도·점검)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단체에 대하여 해당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지도·점검을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매년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.

제6조(포상) 도지사는 범죄예방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 또는 그 소속 대원 등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7조(유관기관과의 협력) 도지사는 자율방범단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충북경찰청장, 시·군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적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율방범대”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2. “자율방범대원”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자율방범대장”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.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제12조(중앙회·연합회·연합대 설립 등)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시·도자율방범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에 시·군·구자율방범연합대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, 연합회는 시·도경찰청장에게,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회, 연합회 및 연합대(이하 “중앙회등”이라 한다)의 조직·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경비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·장비의 구입, 교육·훈련,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금지의무)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
2.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
3. 소송·분쟁·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4.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
② 자율방범대·중앙회등(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)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(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□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)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(이하 “자율방범활동”이라 한다)을 위한 복장·장비·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·보수비
2.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·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(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) 및 운영비
3.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·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
4. 그 밖에 경찰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조(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자율방범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·보수비
2.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(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) 및 운영비
3.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·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
4. 그 밖에 시·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내 치안유지·범죄예방·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및 체육대회 경비 지원
- 방범활동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 보호를 위한 상해보험료 등

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(지원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4년~2028년까지 5년으로 하고,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
- 경찰서 등록된 자율방범대원 4,563명 기준으로 작성('23.10.4.기준)

나. 추계 결과 : 1,995백만원(도 1,100 시군 895)

- 충청북도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을 시행할 경우,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5년간 1,99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합계
세 출	858	284	284	284	285	1,995

- 산출내역 : 신규(피복비) 130천원 x 4,563명 = 593,190천원 (도비 30% 시군비 70%)
신규(상해보험료) 연간 30천원 x 4,563명 = 136,890천원 (도비 30% 시군비 70%)
신규(체육대회) 20,000천원 x 1회 = 20,000천원 (도비 100%)
기존(운영비지원) 66,980천원 x 1회 = 66,980천원 (도비 100%)
기존(안전장비 등) 60,500천원 x 1식 = 60,500천원 (도비 100%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과장 최필규

(담당자 : 자치경찰행정과 전산6급 함중태)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입							
세 출		857,560	284,370	284,370	284,370	284,370	1,995,040
신규	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(도·시군 30 : 70)	593,190					593,190
	자율방범대 상해보험료 지원 (도·시군 30 : 70)	136,890	136,890	136,890	136,890	136,890	684,450
	자율방범연합 체육대회 지원 (도 100)		20,000	20,000	20,000	20,000	80,000
	기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	66,980	66,980	66,980	66,980	66,980	334,900
	기존 자율방범대 안전장비 및 방한용품 지원	60,500	60,500	60,500	60,500	60,500	302,500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346,504	188,547	188,547	188,547	188,547	1,100,692
	지방세	346,504	188,547	188,547	188,547	188,547	1,100,692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시군비		511,056	95,823	95,823	95,823	95,823	894,348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